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21640
----------	-------

제출연월일 : 2026. 9. 29.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2월 31일에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106개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효과성 및 타당성 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45개 특례에 대해서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대한 국유재산 대부료 감면 등 53개 특례에 대해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그 존속기한을 각각 연장하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운용 필요성이 낮은 8개 특례는 국유재산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②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국유·공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한다.

③ 정부법무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을 삭제한다.

④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를 “(공유재산의 대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

체”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을 “공유재산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유재산·공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한다.

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⑥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을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국·공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재산이나 시설물의 관리청 또는”을 “해당”으로 한다.

⑦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를 “(공유재산의 대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을 “공유재산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유재산·공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한다.

[별표]

이 법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제4조 관련)

연번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특례유형	존속기한
1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2	「결핵예방법」 제24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3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제17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33. 12. 31.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2031. 12. 31.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1. 12. 31.
7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8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3 및 제40조의4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9	「공연법」 제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1. 12. 31.
10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11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1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가등 및 양여	2029. 12. 31.
13	「광주과학기술원법」 제9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4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8. 12. 31.
15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2031. 12. 31.
16	「국가철도공단법」 제2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1. 12. 31.
17	「국립공원공단법」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0. 12. 31.

1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19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8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20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21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22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1. 12. 31.
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6	사용료등의 감면	2030. 12. 31.
2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8. 12. 31.
25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1. 12. 31.
26	「국방과학연구소법」 제21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2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2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29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3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31	「국토안전관리원법」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32	「국회사무처법」 제10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1. 12. 31.
33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양여	2029. 12. 31.
34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1. 12. 31.
3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4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36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1. 12. 31.

37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1. 12. 31.
3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3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양여	2029. 12. 31.
4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41	「노인복지법」 제54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1. 12. 31.
42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양여	2029. 12. 31.
43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44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45	「농촌진흥법」 제34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46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9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1. 12. 31.
47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48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4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1. 12. 31.
50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14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1. 12. 31.
5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5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	양여	2029. 12. 31.
53	「도시개발법」 제69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5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제54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55	「도시철도법」 제11조	양여	2029. 12. 31.
56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가등 및 양여	2029. 12. 31.
57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58	「독립기념관법」 제14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59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60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양여	2029. 12. 31.
61	「모자보건법」 제22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1. 12. 31.
6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6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1. 12. 31.
64	「문학진흥법」 제13조	양여	2029. 12. 31.
65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1. 12. 31.
6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67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0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68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1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6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1. 12. 31.
70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7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1. 12. 31.
72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73	「방위사업법」 제32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가등 및 양여	2029. 12. 31.
74	「방위사업법」 제4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75	「법률구조법」 제2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7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4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7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78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2조	양여	2029. 12. 31.
7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0. 12. 31.

8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9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1. 12. 31.
81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8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8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8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8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0. 12. 31.
8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 및 제46조의7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33. 12. 31.
8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8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33. 12. 31.
8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8	사용료등의 감면	2031. 12. 31.
8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9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91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9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9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9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95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3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96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14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97	「선원법」 제11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98	「선원법」 제14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99	법률 제10710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양여	2029. 12. 31.
10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0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9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0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8. 12. 31.
10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8. 12. 31.
104	「수도법」 제77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2031. 12. 31.
105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106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107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10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10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8조	양여	2029. 12. 31.
11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1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6조의2	양여	2029. 12. 31.
112	「아동복지법」 제62조 (아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에 대한 사용료등의 감면으로 한정한다)	사용료등의 감면	2031. 12. 31.
11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11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11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16	「암관리법」 제3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1. 12. 31.
117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1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11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12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9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21	「영유아보육법」 제39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2031. 12. 31.
122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2	양여	2029. 12. 31.
12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124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2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26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127	「울산과학기술원법」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128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1. 12. 31.
129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1. 12. 31.
13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3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3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13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3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3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1. 12. 31.
136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37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1. 12. 31.
138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39	「전시산업발전법」 제26조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140	「전쟁기념사업회법」 제1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4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4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가등 및 양여	2029. 12. 31.
14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5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14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4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4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4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0. 12. 31.
148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49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50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51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1. 12. 31.
152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18조	양여	2029. 12. 31.
15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15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7. 12. 31.

15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1. 12. 31.
156	「철도사업법」 제44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57	「철도사업법」 제46조의2	장기 사용허가등	2035. 12. 31.
158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1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15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1. 12. 31.
160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161	「청소년 기본법」 제5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62	「청소년 기본법」 제5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1. 12. 31.
163	「초지법」 제1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64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6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2031. 12. 31.
16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4조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가등 및 양여	2029. 12. 31.
167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168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169	「하수도법」 제64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17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양여	2029. 12. 31.
171	「한국고전번역원법」 제14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172	「한국공항공사법」 제10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1. 12. 31.
173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1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174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2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75	「한국국방연구원법」 제18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176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1. 12. 31.
177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20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78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1. 12. 31.
17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4조	양여	2029. 12. 31.
180	「한국법학원 육성법」 제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1. 12. 31.
18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13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18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1. 12. 31.
183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33. 12. 31.
184	「한국산업은행법」 제32조	양여	2029. 12. 31.
185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1. 12. 31.
186	「한국연구재단법」 제12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8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8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89	「한국철도공사법」 제14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1. 12. 31.
190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191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제3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192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1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1. 12. 31.
193	법률 제16160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부칙 제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1. 12. 31.
194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195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1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1. 12. 31.
196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2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0. 12. 31.

197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3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198	「항로표지법」 제39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99	「항로표지법」 제4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200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1조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201	「항만공사법」 제2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1. 12. 31.
202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양여	2029. 12. 31.
203	「해양환경관리법」 제10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20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장기 사용허가등 및 사용료등의 감면	2028. 12. 31.
20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20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20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가등 및 양여 (대체자산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양여에 한정한다)	2032. 12. 31.
208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8. 12. 31.
209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1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32. 12. 31.
210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1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0. 12. 31.
21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33. 12. 31.
21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33. 12. 3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 비용추계의 결과

○ 수입 : '27년~'31년 연평균 △640,631백만원

구 분 \ 연 도		(단위: 백만원)					합 계	연평균
		2027	2028	2029	2030	2031		
지출			해	당	없	음		
	소 계(A)							
수입	○ 대한결핵협회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 (별표 제2호)	△569	△565	△560			△1,694	△565
	○ 고엽제전우회에 대한 사용료 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 (별표 제5호)	-	-	-	-	-	-	-
	○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사용료 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 (별표 제6호)	△3	△3	△3	△3	△3	△15	△3
	○ 국·공립 공연장 수탁운영자에 대한 사용료 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 (별표 제9호)	△10,481	△10,481	△10,481	△10,481	△10,481	△52,405	△10,481
	○ 광주과학기술원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 (별표 제13호)	△1,459	△1,459	△1,459			△4,377	△1,459
	○ 국가유공자단체들에 대한 사용료 등 감면특례 존속기한 연장 (별표 제15호)	△108	△108	△108	△108	△108	△540	△108

○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사용료 등 감면 특례 존속 기한 연장 (별표 제16호)	△1,397	△1,397	△1,397	△1,397	△1,397	△6,985	△1,397
○ 국립소방병원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 기한 연장 (별표 제21호)	-	-	-			-	-
○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사용료 등 감면 특례 존속 기한 연장 (별표 제22호)	△18,533	△18,832	△19,262	△19,701	△20,150	△96,478	△19,296
○ 국민체육진흥 공단에 대한 사용료 등 감면 특례 존속 기한 연장 (별표 제25호)	△5,606	△5,606	△5,606	△5,606	△5,606	△28,030	△5,606
○ 산림문화휴양· 경제림조성 등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 (별표 제27호)	△12,710	△19,700	△19,700			△52,110	△17,370
○ 국토안전관리원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 기한 연장 (별표 제31호)	△218	△218	△218			△654	△218
○ 국회 활동을 지원 하는 법인에 대해 사용료 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 (별표 제32호)	△638	△650	△662	△675	△687	△3,312	△662
○ 군인 밀집지역 내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자에 대한 사용료 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 (별표 제34호)	△334	△334	△334	△334	△334	△1,670	△334
○ 규제특구 내 국가 설립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 (별표 제35호)	-	-	-			-	-

○ 기능대학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 (별표 제36호)	△29,428	△29,428	△29,428	△29,428	△29,428	△147,140	△29,428
○ 한국기상산업 기술원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 (별표 제37호)	△823	△823	△823	△823	△823	△4,115	△823
○ 기업도시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 (별표 제40호)	-	-	-			-	-
○ 노인보건복지연 구시설 및 사업육 성에 대한 사용 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 (별표 제41호)	△1,079	△1,079	△1,079	△1,079	△1,079	△5,395	△1,079
○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 (별표 제43호)	-	-	-			-	-
○ 농업인이 농외 소득에 재산활용 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 (별표 제44호)	-	-	-			-	-
○ 대구경북과학 기술원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 (별표 제46호)	△7,234	△7,234	△7,234	△7,234	△7,234	△36,170	△7,234
○ 대한노인회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 (별표 제47호)	△4	△4	△4			△12	△4
○ 헌정회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 (별표 제48호)	△429	△437	△445			△1,311	△437
○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 (별표 제49호)	△672	△672	△672	△672	△672	△3,360	△672

○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에 대한 사 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 (별표 제70호)	△19	△19	△19			△57	△19
○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 기한 연장 (별표 제71호)	△1,525	△1,525	△1,525	△1,525	△1,525	△7,625	△1,525
○ 한국원자력환경 공단에 대한 사 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 (별표 제72호)	-	-	-			-	-
○ 방산업체 및 전문 연구기관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 (별표 제74호)	△13	△13	△13			△39	△13
○ 법률구조법인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 (별표 제75호)	-	-	-			-	-
○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 (별표 제80호)	△1,469	△1,469	△1,469	△1,469	△1,469	△7,345	△1,469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 기한 연장 (별표 제81호)	-	-	-			-	-
○ 한국산림복지 진흥원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 (별표 제82호)	-	-	-			-	-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및 한국선원복지 고용센터, 선원 복지증진 사업자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 기한 연장 (별표 제97호)	-	-	-			-	-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 (별표 제98호)	-	-	-			-	-
○ 소방기술업체 창업자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 (별표 제100호)	-	-	-			-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 (별표 제101호)	△3,089	△3,089	△3,089			△9,267	△3,089
○ 수도사업을 위해 지자체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 (별표 제104호)	△707	△707	△707	△707	△707	△3,535	△707
○ 행복도시 조성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 (별표 제110호)	-	-	-			-	-
○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 (별표 제112호)	△178	△178	△178	△178	△178	△890	△178
○ 국립암센터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 (별표 제116호)	△6,920	△6,920	△6,920	△6,920	△6,920	△34,600	△6,920
○ 여성기업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 (별표 제117호)	-	-	-			-	-
○ 어린이집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 (별표 제121호)	△772	△772	△772	△772	△772	△3,860	△772
○ 용산공원 조성사업 시행자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 (별표 제124호)	-	-	-			-	-

○ 용산공원 관리 센터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 (별표 제125호)	-	-	-			-	-
○ 이북도민 관련 단체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 (별표 제128호)	△9	△9	△9	△9	△9	△45	△9
○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 (별표 제129호)	△50	△50	△50	△50	△50	△250	△50
○ 일본군위안부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 (별표 제130호)	-	-	-			-	-
○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 (별표 제131호)	△134	△134	△134			△402	△134
○ 자영업을 영위 하려는 장애인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 (별표 제134호)	-	-	-			-	-
○ 한국장애인고용 공단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 (별표 제135호)	△4,260	△4,260	△4,260	△4,260	△4,260	△21,300	△4,260
○ 한국장애인경제인 협회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 (별표 제136호)	-	-	-			-	-
○ 장애인복지단체 등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 (별표 제137호)	△690	△690	△690	△690	△690	△3,450	△690

○ 재해위험 개선 사업 시행자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 (별표 제138호)	-	-	-				-	-
○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 (별표 제140호)	-	-	-				-	-
○ 전통시장·상점가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 (별표 제141호)	△105	△105	△105				△315	△105
○ 민관공동 비축사업 시행자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 (별표 제146호)	-	-	-				-	-
○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유치지역 개발사업자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 (별표 제148호)	-	-	-				-	-
○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 (별표 제149호)	-	-	-				-	-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 (별표 제150호)	-	-	-				-	-
○ 지방문화원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 (별표 제151호)	△10	△10	△10	△10	△10		△50	△10
○ 6·25참전유공자회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 (별표 제155호)	△8	△8	△8	△8	△8		△40	△8

○ 국가철도시설에 건물·시설물 설치 하려는 자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 (별표 제156호)	-	-	-				-	-
○ 지자체에 대한 철도시설 사용료 등 감면 특례 존 속기한 연장 (별표 제159호)	△1,509	△1,509	△1,509	△1,509	△1,509	△7,545	△1,509	
○ 청소년육성기금 관리기관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 (별표 제161호)	-	-	-				-	-
○ 청소년시설 단체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 기한 연장 (별표 제162호)	△20	△20	△20	△20	△20	△100	△20	
○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 (별표 제163호)	△1,161	△1,161	△1,161			△3,483	△1,161	
○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 (별표 제164호)	-	-	-				-	-
○ 특수임무유공자 단체에 대한 사 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 (별표 제165호)	△8	△8	△8	△8	△8	△40	△8	
○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 기한 연장 (별표 제172호)	△7,541	△7,541	△7,541	△7,541	△7,541	△37,705	△7,541	
○ 한국교통안전공단 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 기한 연장 (별표 제174호)	-	-	-				-	-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 (별표 제192호)	△13,478	△13,478	△13,478	△13,478	△13,478	△67,390	△13,478
○ 한국해양교통안전 공단에 대한 사 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 (별표 제193호)	△38	△38	△38	△38	△38	△190	△38
○ 한국해양수산 연수원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 (별표 제195호)	△10,577	△10,577	△10,577	△10,577	△10,577	△52,885	△10,577
○ 항로표지검사 대행기관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 (별표 제198호)	△1,511	△1,511	△1,511			△4,533	△1,511
○ 한국항로표지 기술원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 (별표 제199호)	△1	△1	△1			△3	△1
○ 부산·울산·여수· 인천 등 4개 항만 공사에 대한 사 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 (별표 제201호)	△431,471	△431,471	△431,471	△431,471	△431,471	△2,157,355	△431,471
○ 해양환경공단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 기한 연장 (별표 제203호)	△1,137	△1,137	△1,137			△3,411	△1,137
○ 혁신도시 조성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 (별표 제205호)	△159	△159	△159			△477	△159
소 계(B)	△649,310	△657,086	△658,020	△627,783	△628,747	△3,220,946	△640,631
총 비용(A-B)	-	-	-	-	-	-	-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제4조 관련 별표 5,6,9,15,16,22,25,32,34,36,37,41,46,49,50,61, 63,65,69,71,80,104,112,116,121,128,129,135, 137,151,155,159,162,165,172,176,178,180,182, 185,189,192,193,195,201 등 45건	‘26년말 존속기한 종료 예정인 특례 적용대상에 대한 사용료등의 감면 특례 를 5년 연장하여, 존속기한이 종료되 는 경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 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2	제4조관련 별표 2,13,21,27,31,35,40,43,44,47,48,57,59,62,66, 70,72,74,75,81,82,97,98,100,101,110,117,124, 125,130,131,134,136,138,140,141,146,148,149, 150,156,161,163,164,174,177,186,187,188,198, 199,203,205 등 53건	‘26년말 존속기한 종료 예정인 특례 적용대상에 대한 사용료등의 감면 특례 를 3년 연장하여, 존속기한이 종료되 는 경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 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별표 제2호 「결핵예방법」제24조	○	-
2	별표 제5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X	최근 특례 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3	별표 제6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	○	-
4	별표 제9호 「공연법」 제8조	○	-
5	별표 제13호 「광주과학기술원법」 제9조	○	-
6	별표 제15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	-
7	별표 제16호 「국가철도공단법」 제26조	○	-
8	별표 제21호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 한 법률」제14조제1항	X	국립소방병원과 위수탁계약에 따라 서울대병원에서 수탁관리
9	별표 제22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	-

10	별표 제25호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	-
11	별표 제27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
12	별표 제31호 「국토안전관리원법」 제15조	○	-
13	별표 제32호 「국회사무처법」 제10조	○	-
14	별표 제34호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	-
15	별표 제35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별법」 제54조	X	최근 특례 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16	별표 제36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8조	X	최근 특례 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17	별표 제37호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	○	-
18	별표 제40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6조	X	최근 특례 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19	별표 제41호 「노인복지법」 제54조	○	-
20	별표 제43호 「농어촌정비법」 제23조	X	최근 특례 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21	별표 제44호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X	최근 특례 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22	별표 제46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9조	○	-
23	별표 제49호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
24	별표 제48호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3조	○	-
25	별표 제49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	○	-
26	별표 제50호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14조	○	-
27	별표 제57호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15조	X	최근 특례 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28	별표 제59호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X	최근 특례 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29	별표 제61호 「모자보건법」 제22조	○	-
30	별표 제62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	-
31	별표 제63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	-
32	별표 제65호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	○	-

33	별표 제66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X	최근 특례 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34	별표 제69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	O	-
35	별표 제70호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	O	-
36	별표 제71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5조	O	-
37	별표 제72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3조	X	최근 특례 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38	별표 제74호 「방위사업법」 제45조	O	-
39	별표 제75호 「법률구조법」 제28조	X	최근 특례 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40	별표 제80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9조	O	-
41	별표 제81호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	X	최근 특례 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42	별표 제8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	X	최근 특례 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43	별표 제97호 「선원법」 제118조	X	최근 특례 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44	별표 제98호 「선원법」 제146조	X	최근 특례 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45	별표 제100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X	추계곤란(최근 5년 실적 없음) 향후 소방청의 소방신기술 실용화 지원정책 추진에 따라 이용 실적 증가가 예상됨
46	별표 제101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9조	O	-
47	별표 제104호 「수도법」 제77조의2	O	-
48	별표 제110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X	건축공사 준공일정에 따라 주기적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49	별표 제112호 「아동복지법」 제62조	O	-
50	별표 제116호 「암관리법」 제38조	O	-
51	별표 제117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X	최근 특례 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52	별표 제121호 「영유아보육법」 제39조의2	O	-
53	별표 제124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7조	X	최근 특례 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54	별표 제125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8조	X	최근 특례 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55	별표 제128호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O	-
56	별표 제129호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1조	O	-
57	별표 제130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X	사례없어 추정 불가
58	별표 제131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6조	O	-
59	별표 제134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7조	X	최근 특례 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60	별표 제135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6조	O	-
61	별표 제136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5조	X	최근 특례 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62	별표 제137호 「장애인복지법」 제48조	O	-
63	별표 제138호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X	최근 특례 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64	별표 제140호 「전쟁기념사업회법」 제13조	X	최근 특례 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65	별표 제141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 별법」 제18조	O	-
66	별표 제146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	X	최근 특례 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67	별표 제148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X	최근 특례 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68	별표 제149호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제17조	X	최근 특례 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69	별표 제150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	X	최근 특례 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70	별표 제151호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O	-
71	별표 제155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O	-
72	별표 제156호 「철도사업법」 제44조	X	최근 특례 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73	별표 제159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1조	O	-
74	별표 제161호 「청소년 기본법」 제55조	X	사례없어 추정 불가

75	별표 제162호 「청소년 기본법」 제57조	O	-
76	별표 제163호 「초지법」 제18조	O	-
77	별표 제164호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X	최근 특례 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78	별표 제165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	O	-
79	별표 제172호 「한국공항공사법」 제10조	O	-
80	별표 제174호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23조	X	최근 특례 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81	별표 제176호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7조	O	-
82	별표 제177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20조	X	- 최근 3년간 한국국제보건의료 재단이 사용한 국유재산이 없음 - 재단법 제20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는 남북관계 경색, 전쟁 발발 등 국가 안보 특수 상황에서 특례활용이 예상되어 금번 특례제한법 개정시 조건부 존치
83	별표 제178호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7조	O	-
84	별표 제180호 「한국법학원 육성법」 제3조	O	-
85	별표 제182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5조	O	-
86	별표 제185호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5조	O	-
87	별표 제186호 「한국연구재단법」 제12조	X	최근 특례 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88	별표 제187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16조	O	-
89	별표 제188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O	-
90	별표 제189호 「한국철도공사법」 제14조	O	-
91	별표 제192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11조	O	-
92	별표 제193호 법률 제16160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부칙 제5조	O	-
93	별표 제195호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11조	O	-
94	별표 제198호 「항로표지법」 제39조	O	-
95	별표 제199호 「항로표지법」 제43조	O	-

96	별표 제201호 「항만공사법」 제27조	○	-
97	별표 제203호 「해양환경관리법」 제105조	○	-
98	별표 제205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비용추계의 상세내역과 동일하며, 개정 법률안이 '26.12월 중에 개정법률안 공포를 전제로 작성
- '26년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인 별표 각 호 106개 규정은 '26년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세수 증가가 발생하나, 98개 규정은 적용기한 연장에 따라 세수 증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증가하지 않을 세수를 추계함
 - ※ 적용기한이 연장되지 않는 8개 규정은 향후 국유재산특례 지출 계획이 없어 세수 증가 추계에서 제외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대한결핵협회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2호)
 - 세수감 : △1,694백만원(특례존속 기간인 '27~'29년 3년간, 연평균 △565)
 - 추계내역 : 공시지가 '25-'26 증감율(△0.7%)을 적용하여 '28-'29 공시지가 추계, 정상사용료 2.5% 반영하여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액 추계
- 고엽제전우회에 대한 사용료 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5호)
 - 세수감 : 추정곤란
 - 세부내용 : 최근 특례 활용내역 없음
-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사용료 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6호)
 - 세수감 : △15백만원
 - △3백만원 × 5년(일몰 연장기간) = △15백만원
- 국·공립 공연장 수탁운영자에 대한 사용료 등 감면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9호)
 - 세수감 : '27~'31년 합계 △52,405백만원(연평균 △10,481백만원)
 - 추계내역 : 명동예술극장, 국립정동극장의 토지 및 건물가액 산정('27년 기준)
- 광주과학기술원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13호)
 - 세수감 : △4,377백만원

- △1,459백만원 × 3년(일몰 연장기간) = △4,377백만원

□ 국가유공자단체들에 대한 사용료 등 감면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15호)

○ 세수감 : △540백만원

- △108백만원 × 5년(일몰 연장기간) = △540백만원

□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사용료 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16호)

○ 세수감 : △6,985백만원

- △1,397백만원 × 5년(일몰 연장기간) = △6,985백만원

□ 국립소방병원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21호)

○ 세수감 : 추정곤란

- 세부내용: 국립소방병원과 위수탁계약에 따라 서울대병원에서 수탁관리

□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사용료 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22호)

○ 세수감 : △96,478백만원

- 추계내역 : - 5필지 및 14건물에 대한 사용료 감면

- 최근 3개년 평균 인상률 2.28%적용하여 추계함

(근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행정목적 수행에 의해 1천분의 25이상 적용

□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한 사용료 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25호)

○ 세수감 : △28,030백만원

- 추계내역 : △5,606백만원*×5년(연장기간) = △28,030백만원

* '27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에 따른 '27년 예상 감면액(추정)

□ 산림문화휴양·경제림조성 등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27호)

○ 세수감 : 연평균 △17,370백만원

- 추계내역 : '27년 특례운용계획 및 최근 2년간('24~'25년) 특례운용실적 평균액 반영

*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제1항제1호의3 신설(2023.12.21.) 시행으로 기존 특례운용 건 일부가 '24년도부터 국유재산특례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23년 이전 특례운용실적은 추계에서 제외

□ 국토안전관리원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31호)

○ 세수감 : △654백만원

- △218백만원 × 3년(일몰 연장기간) = △654백만원

□ 국회활동 지원 법인에 대한 사용료 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32호)

- 세수감 : △3,312백만원(5년 평균 △662.4백만원)
 - 추계내역 : 최근 5년간 국회소재지(여의도동 1) 개별공시지가 상승률(1.88%) 반영
- 군인 밀집지역 내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자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34호)
 - 세수감 : △1,670백만원
 - △334백만원 × 5년(일몰 연장기간) = △1,670백만원
- 규제특구 내 국가설립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35호)
 - 세수감 : 추정곤란
 - 최근 특례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 기능대학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36호)
 - 세수감 : △147,410백만원
 - △29,482백만원 × 5년(일몰 연장기간) = △147,410백만원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37호)
 - 세수감 : △4,115백만원
 - △823백만원 × 5년(일몰 연장기간) = △4,115백만원
- 기업도시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40호)
 - 세수감 : 추정곤란
 - 최근 특례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 노인보건복지연구시설 및 사업육성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41호)
 - 세수감 : △5,395백만원
 - △1,079백만원 × 5년(일몰 연장기간) = △5,395백만원
-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43호)
 - 세수감 : 추정곤란
 - 최근 특례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 농업인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44호)
 - 세수감 : 추정곤란
 - 최근 특례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46호)

- 세수감 : △36,170백만원
 - △7,234백만원 × 5년(일몰 연장기간) = △36,170백만원
- 대한노인회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47호)
 - 세수감 : △12백만원
 - △4백만원 × 3년(일몰 연장기간) = △12백만원
- 헌정회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48호)
 - 세수감 : △1,311백만원(최근 3년평균 △437백만원)
 - 추계내역 : 최근 5년간 국회소재지(여의도동 1) 개별공시지가 상승률(1.88%) 반영
-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49호)
 - 세수감 : △3,360백만원
 - △672백만원 × 5년(일몰 연장기간) = △3,360백만원
-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50호)
 - 세수감 : △119,765백만원
 - △23,953백만원 × 5년(일몰 연장기간) = △119,765백만원
-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57호)
 - 세수감 : 추정곤란
 - 최근 특례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 동북아역사재단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59호)
 - 세수감 : 추정곤란
 - 최근 특례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 인구보건복지협회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61호)
 - 세수감 : 연평균 163백만원 감(5년간 817백만원 감)
 - 추계내역 : (소재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 13길 62(토지: 1,282.30㎡/ 건물: 1,585.48㎡) 재산가액의 정상사용료 2.5% 계상
- 무형유산 전수자 등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62호)
 - 세수감 : 연평균 △1,434백만원(총 4,303백만원)
 - 추계내역 : 최근 5개년 무형유산 전수자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최근 5개년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의 연평균 변화율을 반영하여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연도별 사용료 면제액을 세수감으로 추계
 - ※ 추계기간: 2027년~2029년(3년)
 - ※ 연도별: '27년 1,415 → '28년 1,434 → '29년 1,454백만원

- 유네스코 아·태무형문화센터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63호)
 - 세수감 : △161백만원(2027~2031년)
 - 추계내역 : 건물 감정평가액 및 토지 공시지가 예상액을 반영한 연도별 재산가액에 사용료를 2.5%를 적용하여 정상사용료를 산정하고, 2027년~2031년 예상 감면액을 합산
- 국가유산진흥원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65호)
 - 세수감 : 연평균 △12,918백만원(총 64,588백만원)
 - 추계내역 : 최근 5개년 국가유산진흥원에 대한 사용료 감면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최근 5개년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의 연평균 변화율을 반영하여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연도별 사용료 면제액을 세수감으로 추계
 - ※ 추계기간: 2027~2031년(5년)
 - ※ 연도별: '27년 11,984 → '28년 12,434 → '29년 12,900 → '30년 13,384 → '31년 13,886백만원
- 물류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66호)
 - 세수감 : 추정곤란
 - 최근 특례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69호)
 - 세수감 : △5,265백만원
 - $\Delta 1,053\text{백만원} \times 5\text{년(일몰 연장기간)} = \Delta 5,265\text{백만원}$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70호)
 - 세수감 : △57백만원
 - $\Delta 19\text{백만원} \times 3\text{년(일몰 연장기간)} = \Delta 57\text{백만원}$
-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71호)
 - 세수감 : △7,625백만원
 - 추계내역 : $\Delta 1,525\text{백만원} \times 5\text{년(연장기간)} = \Delta 7,625\text{백만원}$
 - * '27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에 따른 '27년 예상 감면액(추정)
-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72호)
 - 세수감 : 추정곤란
 - 최근 특례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 방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74호)
 - 세수감 : △39백만원
 - $\Delta 13\text{백만원} \times 3\text{년(일몰 연장기간)} = \Delta 39\text{백만원}$

- ☐ 법률구조법인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75호)
 - 세수감 : 추정곤란
 - 최근 특례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 ☐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80호)
 - 세수감 : △7,345백만원
 - $\triangle 1,469\text{백만원} \times 5\text{년(일몰 연장기간)} = \triangle 7,345\text{백만원}$
-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81호)
 - 세수감 : 추정곤란
 - 최근 특례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82호)
 - 세수감 : 추정곤란
 - 최근 특례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및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97호)
 - 세수감 : 추정곤란
 - 최근 특례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98호)
 - 세수감 : 추정곤란
 - 최근 특례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 ☐ 소방기술업체 창업자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100호)
 - 세수감 : 추정곤란
 - 세부내용 : 향후 소방청의 소방신기술 실용화 지원정책 추진에 따라 이용 실적 증가가 예상됨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101호)
 - 세수감 : △9,267백만원(3년 평균 △3,089백만원)
 - 추계내역 : 향후 3년간 동일하거나 유사한 금액일 것으로 가정하고 설정
 - * 다만,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를 받을 당시 재정지원 추정액이 연 10%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실제 세수감액분은 더 클 수 있음('23년 3,549백만원 , '24년 3,941백만원, '25년 4,475백만원)
- ☐ 수도사업을 위해 지자체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104호)
 - 세수감 : △3,535백만원

- △707백만원 × 5년(일몰 연장기간) = △3,535백만원

□ 행복도시 조성사업 시행자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 110호)

○ 세수감 : 추정곤란

- 최근 특례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112호)

○ 세수감 : △890백만원

- △178백만원 × 5년(일몰 연장기간) = △890백만원

□ 국립암센터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116호)

○ 세수감 : △34,600백만원

- △6,920백만원 × 5년(일몰 연장기간) = △34,600백만원

< △6,920백만원 산출내역 >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구분		면적(㎡)	재산가액(원)	정상사용료 A (2.5 %)	부과사용료 B (0.0 %)
재산 종류 (물건합산)	토지	43,954.60	201,771,393,570	5,044,284,839	-
	건물	141,946.74	75,039,651,615	1,875,991,290	-
	소계	185,901.34	276,811,045,185	6,920,276,129	-
재정지원액(원) (사용료 감면의 경우 A-B, 양여인 경우 재산가액)					6,920,276,129

□ 여성기업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117호)

○ 세수감 : 추정곤란

- 최근 특례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 어린이집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121호)

○ 세수감 : △3,860백만원

- △772백만원 × 5년(일몰 연장기간) = △3,860백만원

□ 용산공원 조성사업 시행자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124호)

○ 세수감 : 추정곤란

- 최근 특례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 용산공원 관리센터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125호)

○ 세수감 : 추정곤란

- 최근 특례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 이북도민 관련단체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128호)

○ 세수감 : △45백만원

- △9백만원 × 5년(일몰 연장기간) = △45백만원

□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129호)

○ 세수감 : △250백만원

- △50백만원 × 5년(일몰 연장기간) = △250백만원

□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130호)

○ 세수감 : 추정곤란

- 세부내용 : 최근 특례 활용내역 없음

□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131호)

○ 세수감 : △402백만원

- △134백만원 × 3년(일몰 연장기간) = △402백만원

□ 자영업을 영위하려는 장애인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134호)

○ 세수감 : 추정곤란

- 최근 특례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135호)

○ 세수감 : △21,300백만원

- △4,260백만원 × 5년(일몰 연장기간) = △21,300백만원

□ 한국장애경제인협회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136호)

○ 세수감 : 추정곤란

- 최근 특례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 장애인복지단체 등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137호)

○ 세수감 : △2,640백만원

- △528백만원 × 5년(일몰 연장기간) = △2,640백만원

□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자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138호)

○ 세수감 : 추정곤란

- 최근 특례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140호)

○ 세수감 : 추정곤란

- 최근 특례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 전통시장·상점가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141호)

- 세수감 : △315백만원
- $\triangle 105\text{백만원} \times 3\text{년(일몰 연장기간)} = \triangle 315\text{백만원}$

□ 민관공동 비축사업 시행자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146호)

- 세수감 : 추정곤란
- 최근 특례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유치지역 개발사업자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148호)

- 세수감 : 추정곤란
- 최근 특례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149호)

- 세수감 : 추정곤란
- 최근 특례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150호)

- 세수감 : 추정곤란
- 최근 특례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 지방문화원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151호)

- 세수감 : 연평균 △10백만원 (향후 5년간 총 △50백만원)
- 추계내역 : 감면 대상 지방문화원 수(1개소) × 평균 재산가액(200백만원) × 사용료율(5%) × 감면율(100%) = 연간 △10백만원
- 산출근거 : 현재 해당 감면 특례를 적용받아 국유재산을 무상 임차 중인 지방문화원 1개소의 연간 임대료 감면액(△10백만원)을 기준으로 산출함.
- 향후 변동 요인: 현재는 1개소 기준으로 추계하였으나, 향후 특례제도 존치에 따른 제도 안내 및 활용 방안 홍보가 이루어질 경우 감면 대상 기관 및 세수감 규모가 추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6·25참전유공자회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155호)

- 세수감 : △40백만원
- $\triangle 8\text{백만원} \times 5\text{년(일몰 연장기간)} = \triangle 40\text{백만원}$

- ☐ 국가철도시설에 건물·시설물 설치하려는 자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156호)
 - 세수감 : 추정곤란
 - 최근 특례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 ☐ 철도시설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159호)
 - 세수감 : △7,545백만원
 - $\triangle 1,509\text{백만원} \times 5\text{년(일몰 연장기간)} = \triangle 7,545\text{백만원}$
- ☐ 청소년육성기금 관리기관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161호)
 - 세수감 : 추정곤란
 - 세부내용 : 최근 특례 활용내역 없음
- ☐ 청소년시설·단체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162호)
 - 세수감 : △100백만원
 - $\triangle 20\text{백만원} \times 5\text{년(일몰 연장기간)} = \triangle 100\text{백만원}$
- ☐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163호)
 - 세수감 : △3,483백만원
 - $\triangle 1,161\text{백만원} \times 3\text{년(일몰 연장기간)} = \triangle 3,483\text{백만원}$
- ☐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164호)
 - 세수감 : 추정곤란
 - 최근 특례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 ☐ 특수임무유공자단체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165호)
 - 세수감 : △40백만원
 - $\triangle 8\text{백만원} \times 5\text{년(일몰 연장기간)} = \triangle 40\text{백만원}$
- ☐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 172호)
 - 세수감 : △37,705백만원
 - $\triangle 7,541\text{백만원} \times 5\text{년(일몰 연장기간)} = \triangle 37,705\text{백만원}$
- ☐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174호)
 - 세수감 : 추정곤란
 - 최근 특례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 ☐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176호)

- 세수감 : △1,540백만원
 - △308백만원 × 5년(일몰 연장기간) = △1,540백만원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177호)
 - 세수감 : 추정곤란
 - 최근 특례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178호)
 - 세수감 : △29,425백만원
 - △5,885백만원 × 5년(일몰 연장기간) = △29,425백만원
- 한국법학원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180호)
 - 세수감 : △445백만원
 - △89백만원 × 5년(일몰 연장기간) = △445백만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182호)
 - 세수감 : △81,940백만원
 - △16,388백만원 × 5년(일몰 연장기간) = △81,940백만원
-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185호)
 - 세수감 : △37,790백만원
 - △7,558백만원 × 5년(일몰 연장기간) = △37,790백만원
- 한국연구재단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186호)
 - 세수감 : 추정곤란
 - 최근 특례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187호)
 - 세수감 : △9백만원
 - △3백만원 × 3년(일몰 연장기간) = △9백만원
-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188호)
 - 세수감 : △18백만원
 - △6백만원 × 3년(일몰 연장기간) = △18백만원
-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189호)
 - 세수감 : △920백만원
 - △184백만원 × 5년(일몰 연장기간) = △920백만원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192호)
 - 세수감 : △67,390백만원
 - △13,478백만원 × 5년(일몰 연장기간) = △67,390백만원

-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193호)
 - 세수감 : △190백만원
 - △38백만원 × 5년(일몰 연장기간) = △190백만원
-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195호)
 - 세수감 : △52,885백만원
 - △10,577백만원 × 5년(일몰 연장기간) = △52,885백만원
- ☐ 항로표지검사 대행기관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198호)
 - 세수감 : △4,533백만원
 - △1,511백만원 × 3년(일몰 연장기간) = △4,533백만원
- ☐ 한국항로표지기술원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199호)
 - 세수감 : △3백만원
 - △1백만원 × 3년(일몰 연장기간) = △3백만원
- ☐ 부산·울산·여수·인천 등 4개 항만공사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201호)
 - 세수감 : △2,157,355백만원
 - △431,471백만원 × 5년(일몰 연장기간) = △2,157,355백만원
- ☐ 해양환경공단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203호)
 - 세수감 : △3,411백만원
 - △1,137백만원 × 3년(일몰 연장기간) = △3,411백만원
- ☐ 혁신도시 조성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별표 제205호)
 - 세수감 : △477백만원
 - △159백만원 × 3년(일몰 연장기간) = △477백만원

IV.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추계에 이용한 가정이 변화할 경우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사무관	과장	정책관	실장
강중호	마용재	고종안	황순관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중호	044-215-5254	2482kjh@korea.kr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방안

I. 항목별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은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

〈항목별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구 분 연 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 조세수입·세외수입 또는 국채발행·차입						
○ 회계·기금 간 전입						
○ 기존 예산·기금의 항목 간 조정						
○ 기타						
〈합 계〉						

II.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은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구 분 연 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 중앙정부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지방자치단체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기타						
○						
〈 합 계 〉						

Ⅲ.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1. 중앙정부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

- ☐ '27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용료등의 감면 효율화, 특례 운용·관리 강화 등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해 나갈 예정

Ⅳ. 부대의견

- ☐ 해당없음

Ⅴ. 협의사항

협의시점	협의기관	주요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
		해당사항 없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은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

Ⅵ. 작성자

- ☐ 성명

사무관	과장	정책관	실장
강중호	마용재	고종안	황순관

-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중호	044-215-5254	2482kjh@korea.kr